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26
--------	--------	----

제출년월일 : 199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 정 이 유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법률 제4,795호, 1994. 12. 2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646호, 1995. 5. 16.)에 의거 지방의회(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이 함(안 제5조).
-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34조).
-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던 것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35조).

□ 개 정 근 거

- 지방재정법 제77조(법률 제4,795호, 1994. 12. 22.)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대통령령 제14,646호, 1995. 5. 16.)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덧붙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를 "영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여 이를 제5조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로, "취득·관리 및 처분"을 "취득·처분"으로 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며, "변동이 있을 시는"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로, "전년도 11월 30일까지"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경계획을"로 한다.

제35조중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를 "취득·처분 및 교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및 제84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